

공인검사기관 인정정지

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(시험·검사기관 인정) 및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9조(인정취소 등)의 ②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인검사기관 인정정지를 공고합니다.

2012. 1. 13.

한 국 인 정 기 구 장

기 관 명 (인정번호)	대 표 자 (법인등록번호)	법인주소 (소재지)	인정정지분야 · 항목 및 기간
한국가스검사기술(주) (KI-081)	이상곤 (121111-0126871)	경기도부천시원미구 상동 544-3 (사업장소재지: 위와 같음)	인정분야: 09 에너지 및 자원 0904 도시가스시설 검사 정지기간: 2012.1.13-2012.4.12(3개월)

부칙 :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. 끝.